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설공사 불법행위 관련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39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8. 12.
3. 회부일 : 2024.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국토교통부공무원등”)에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 ----- ----- ----- ----- ----- ----- -----.
1. ~ 53. (생략)	1. ~ 53. (현행과 같음)
<신설>	5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 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50. (생 략) <u><신 설></u>	<u>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u>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 1. ~ 50. (현행과 같음) 51. <u>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u> <u>가. 「건설산업기본법」</u> <u>나. 「건설기술 진흥법」</u> <u>다. 「건설기계관리법」</u>

2. 검토의견

가. 개정안에 따른 대상 범죄 개관

- 개정안이 국토교통부공무원등에게 부여하려는 사법경찰권의 직무 범위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함.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의무·제한규정을 두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건설산업기본법」상 범죄 개관>

조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93조	(제1항)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제94조	(제1항)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95조	건설공사 입찰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호)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제2호)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제3호)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제95조 의2	(제1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제2호)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제3호)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제4호) 제2호의 사람과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제5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6조	(제2호) 건설업 양도·법인합병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제4호) 하도급 관련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제4호의2) 수급인의 위반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5호)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한 자 (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제7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97조	(제1호)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호)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해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4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않은 자	
제98조	제93조·제94조·제95조·제95조의2·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제2호·제3호 벌칙에 대한 양벌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건설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화,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의무·제한규정을 두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건설기술 진흥법」상 범죄 개관>

조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85조	(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¹⁾ 등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등으로 착공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터널·철도 등 시설물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협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86조	(제1항)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2항)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87조	(제1항)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년 이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87조의2	(제1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에게 신분이나 처우에 관한 불이익을 준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88조	(제1호)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한 자 (제1호의2)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1호의3)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제1호의4) 고의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한 시공 여부 확인, 건설자재·부재의 적합성 확인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등의 주요 부분 구조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제3호) 구조검토를 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4호)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않거나 품질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5호)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제6호)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재사용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7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7호의2)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8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제9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제10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89조	(제1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1호의2)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제2호) 건설기술인에 대한 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자 (제3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 (제4호) 지도·감독을 위한 공사현장 등의 공무원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호의2) 개선사항 검토에 대한 실정보고(이하 “실정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제4호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자 (제5호) 부실추정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호의2)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6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90조	제85조·제86조·제88조 또는 제89조 벌칙에 대한 양벌규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검사·점검 및 형식승인,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조정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의무·제한규정을 두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건설기계관리법」상 범죄 개관>

조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40조	(제1조)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제3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제3조의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제3조의3)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	
	(제3조의4)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무상으로 양도한 자	
	(제3조의5)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제5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조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41조	(제1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등록을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조)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제3조)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4조)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조의2)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용·운행한 자	
	(제4조의3)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자	
	(제5조)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제6조)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조)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제8조)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제9조)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	
	(제10조)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제11조)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제12조)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제13조)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제14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제15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조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16조)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제17조)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제1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제19조)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제43조	제40조 또는 제41조 벌칙에 대한 양벌규정	

나. 검토의견

□ 건설공사 안전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품질 및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임.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은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설계·시공, 공사 및 건설기계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품질·안전 확보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분야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관계법 준수 여부 등을 검사 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연구기관

○ 그러나 점검결과 건설업 등록위반, 불법하도급, 건설기계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확인되더라도 압수수색 등의 수사 권한이 없어 적발에 한계를 가지는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공무원등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현장점검과 수사의 연계를 통하여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수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공무원등에게 건설공사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건설공사 관련 범죄는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인 만큼 공사 초기단계부터의 위법사실 적발이 중요한데, 건설 공사 관련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공무원등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될 경우 용이한 현장 접근성 등을 통해 신속한 혐의발견 및 증거확보가 가능하고 신속한 수사로의 전환을 통해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건설 관련 분야는 관련 법령 및 기술·용어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바, 국토교통부공무원등이 가진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미치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건설공사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관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3.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5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3.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01
2	기획재정부(국세청 ³⁾)	조세 관련 범죄	5,273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1,358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312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40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157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9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12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38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208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79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5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4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00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69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7
20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60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2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57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1
2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65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03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6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36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2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2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28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3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3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4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25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5
합 계			14,536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 3)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400
2	부산광역시	〃	334
3	인천광역시	〃	371
4	대구광역시	〃	203
5	대전광역시	〃	172
6	광주광역시	〃	166
7	울산광역시	〃	235
8	세종특별자치시	〃	45
9	경기도	〃	730
10	경상남도	〃	404
11	경상북도	〃	595
12	충청남도	〃	583
13	충청북도	〃	528
14	전라남도	〃	465
15	전라북도	〃	273
16	강원특별자치도	〃	531
17	제주특별자치도	〃	33
합 계			6,068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